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

기 관 명 서구, 동구, 영도구, 강서구, 연제구

내 용

보장기관(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)에서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·제1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자활사업안내」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
자활근로사업단에는 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이 있으며, 이 중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운영기간은 2년까지 허용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대 3년까지 운영 가능하다.

다만 사회서비스형 중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시·군·구청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또한 시장진입형·사회서비스형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중도해체 또는 3

년이 경과하도록 자활기업 창업 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을 해체하고 그 매출적립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시·군·구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다른 자활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서구 등 5개 구에서는 아래 【표】와 같이 사회서비스 사업단 ‘○○○○’ 등 2개 사업단과 시장진입형형 ‘○○○○협동조합’ 등 3개 사업단은 해체된 지 2개월~1년 2개월(감사일 기준: 2017. 3. 8.)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출적립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다.

【표】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 미회수 현황

(단위: 원)

구/군	유형	자활센터명	사업단명	사업단 승인일	사업단 해체일	매출적립 금	매출적립 금 회수여부
계						123,683,687	
서구	사회 서비스형	○○○○ 자활센터	○○○○	2013. 1.2.	2016. 12.31.	19,149,088	미회수
동구	시장 진입형	○○○○ 자활센터	○○○○ 협동조합	2012. 10.15.	2015. 12.31.	49,826,042	미회수
영도 구	시장 진입형	○○○○ 자활센터	○○사업단	2013. 12.1.	2016. 11.30.	14,239,773	미회수
강서 구	사회 서비스형	○○○○○○ 자활센터	○○사업단	2013. 1.2.	2015. 12.31.	31,730,772	미회수
연제 구	시장 진입형	○○○○○○ 자활센터	○○○○○○ ○○점	2014. 1.1.	2016. 12.4.	8,738,012	미회수

조치할 사항

서구청장은

[시정]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19,149,088원을 회수 등 필

요한 조치를 하시고,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시정]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49,826,042원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영도구청장은

[시정]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14,239,773원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강서구청장은

[시정]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31,730,772원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연제구청장은

[시정]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매출적립금 8,738,012원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,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